

##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1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0. 3. 11.(수) 10:03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한상혁 위 원 장  
김석진 부위원장  
허 욱 상임위원  
표철수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 음

---

## 제1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 10시 03분 개회 】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의안·정책관리팀장님,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전해선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2. 국기에 대한 경례

- 전해선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20년도 제1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전차 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12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 및 <보고안건> 3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회의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이용자정책국, 방송기반국 및 방송정책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이 이용자정책국 안건이므로 관련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구로에 위치한 보험회사 콜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 통신사 고객센터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용자국에서 통신사 고객센터 방역 및 근무현황을 점검하였고, 관계자 회의도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객센터 상담사들은 업무특성상 밀접접촉 근무자이므로 통신사에서는 시설 방역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상담사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이 조성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와 유사한 상황을 대비하여 상담사들의 재택근무 시스템 도입 및 확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제 밤에는 KBS 자회사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방송사 일부가 사용 중지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방송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세밀한 부분까지 보다 철저하게 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 6. 의결사항

### 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20-13-072~085)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안)를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제1항, 제24조의2제1항, 제27조의3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등을 위반한 14개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같은 법 제64조제4항, 제64조의3제1항, 제76조제1항 등에 의한 시정조치(안)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조사개요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한 사업자 10개사와 검·경 등이 통보한 사업자(4개사)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대상 14개사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주요결과입니다. 현장조사는 '18년 10월부터 '19년 3월까지, 시정조치(안)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접수는 '19년 5월까지 했습니다. 조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자 일반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개인정보 유출경로 및 내역입니다. 먼저 (주)소프트정보서비스는 관리자 계정 탈취로 인해 5,400여건이 유출되었습니다. (주)스마트관리는 홈페이지 기능테스트 과정에서 4,800여건이 유출되었습니다. 에듀크리에이터(주)는 관리자 계정 탈취로 4만 9,000여건이 유출되었습니다. (주)오마이사이트는 역시 관리자 계정 탈취로 83건이 유출되었습니다. (주)위드이노베이션은 담당자 메일발송 실수로 15만여건의 메일주소가 유출되었습니다. (주)원원소프트는 업로드 취약점을 이용한 웹셸 공격으로 26건이 유출되었습니다. 이데일리(주)는 접근 권한 관리 소홀로 2만 6,000여건이, (주)제트콜 역시 접근권한 관리 소홀로 24만여건이 유출되었습니다. (주)케이에이레저는 SQL-Injection 공격으로 7만 7,000여건이 유출되었습니다. (주)코러의 경우 웹로그 기록이 없어서 개인정보 유출경위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2,500여건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파코비넷 역시 확인되지 않은 유출경로를 통해 240여만 건이 유출되었습니다. (주)펫츠뷰는 SQL-Injection 공격으로 1만 5,000여건이 유출되었습니다. (주)한국경제티브이는 업로드 취약점을 이용한 웹셸 공격으로 91만여건이 유출되었습니다. (주)현현교육 역시 업로드 취약점을 이용한 웹셸 공격으로 211만여건이 유출되었습니다.

<다> 위반사항입니다. 대부분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이고, 보호조치 중 내부관리계획 위반, 접근통제 위반, 접속기록 위반, 암호화 위반 등이 대다수 사업자가 위반한 사항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의견입니다. 먼저 (주)소프트정보서비스의 경우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관련해서 개인정보는 외부 해킹이나 피싱이 아닌 퇴사 직원 등에 의해 유출된 것일 수 있고, 중소기업에 시정명령이나 권고조치 없이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불수용했습니다. 퇴사 직원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도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되며, 위반사항에 따른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은 적법하므로 의견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주)오마이사이트는 개인정보 유출규정과 관련해서 미상의 해커가 3개의 관리자페이지에서 86건의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하지 않고 화면으로 본 상태를 유출로 규정하는 것은 견해차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경우도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므로 위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주)원원소프트는 과징금 부과 관련해서 유출된 정보는 쇼핑몰 프로그램 이용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관한 정보로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유출된 정보에는 프로그램 이용 사업자정보 외에 담당직원의 이름, 이동전화 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데일리(주)는 개인정보 유출신고 지연 관련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받는다는 안내를 받아 개인정보보호법 절차에 따라 5일 이내 신고 통지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휴대전화 교체이벤트 신청자의 개인정보 유출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사항이며, 사업자가 적용 법령을 명확히 인지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역시 위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주)현현교육은 개인정보 유출규정과 관련하여 업로드 서버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불수용했습니다. 미상의 해커가 논란기 홈페이지의 게시글 작성 프로그램 취약점을 이용하여 해당 업로드 서버에 469건의 웹셸을 업로드하여 DB 서버의 회원정보를 조회하여 유출한 경우로서 위 업로드 서버는 직·간접적으로 회원정보에 접근이 가능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므로 위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주)위드이노베이션은 개인정보 유출규정과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단순 부주의로 인해 그룹발송 시 숨김 참조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을 놓친 것이며, '이메일 주소'만 노출되었으므로 다른 유출사고에 비하여 피해가 경미하고, 본건 사고 이후 사내에 대대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대량이메일발송솔루션을 도입하는 등 재발방지대책 이행을 완료했으므로 선처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했습니다. 담당자의 이메일 그룹 발송 변경으로 인한 이메일주소 유출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법령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나 내부직원의 관리·운영상의 잘못은 있으므로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대표자를 비롯한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실시 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이행 토록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8개사는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선처를 요청해 왔습니다. 시정조치(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명령은 (주)소프트정보서비스 등 13개사에 내리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아래와 같이 명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징금 부과대상입니다. (주)소프트정보서비스 등 13개사는 망법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 절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징금 부과는 에듀크리에이터(주) 등 6개사에 대해 정보통신망법과 과징금 부과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먼저 에듀크리에이터(주)입니다. 관련 매출액은 에듀크리에이터(주)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4억 5,600만원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기준금액 관련 에듀크리에이터(주)의 위반행위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부과 기준을 1,000분의 21을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957만 6,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필수적 가중·감경입니다. 위반기간이 1년 이내이므로 기준금액을 유지하고, 최근 3년간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478만 8,000원을 감경하겠습니다. 추가적 가중·감경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95만 8,000원을 감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에듀크리에이터(주)에 대해 과징금 38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오마이사이트입니다. 관련 매출액은 3억 6,580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 기준금액입니다.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1,000분의 21을 적용하여 기준금액을 768만 3,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판단기준과 적용근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적 가중·감경입니다. 위반기간이 1년 이내이므로 기준금액을 유지하고, 최근 3년간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384만원을 감경하겠습니다. 추가적 가중·감경 관련해서 유출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76만 8,000원을 감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최종과징금은 (주)오마이사이트에 대해서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이테일리(주)입니다. 관련 매출액은 7억 3,000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 기준금액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을 1,530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 필수적 가중·감경 관련해서 위반기간이 1년 이내이므로 기준금액을 유지하고 최근 3년간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766만 6,000원을 감경하겠습니다. 추가적 가중·감경은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76만 7,000원을 감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과징금 68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주)제트콜입니다. 관련 매출액은 9억 5,700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 기준금액은 역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을 2,000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 필수적 가중·감경입니다. 최근 3년간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감경하겠습니다. 추가적 가중·감경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200만원을 감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최종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주)한국경제티브이입니다. 관련 매출액은 245억원으로  
 산정했습니다. 기준금액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므로 기준금액을 5억 1,400만원으로 산정  
 했습니다. 필수적 가중·감경 관련해서 최근 3년간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2억 5,700만원을 감경하였습니다. 추가적 가중·감경 관련해서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2,500만원을 감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주)한국경제티브이에 대해서는 과징금 2억 3,100  
 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주)현현교육입니다. 관련 매출액은 486억 7,000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 기준금액은 역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므로 기준금액을 10억 2,200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 필수적 가중·감경입니다. 최근 3년간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기준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5억 1,100만원을 감경하겠습니다. 추가적 가중·감경에서는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5,100만원을 감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과징금은 (주)현현교육에 대해 4억 5,900만원을 부과  
 하고자 합니다. 6개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출내역(안)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총 7억 1,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소프트정보서비스 등 7개사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를 시정명령으로 같음하고자 합니다. 다만, 위반행위와 관련한 과태료는  
 부과됩니다. <표>를 보시면 (주)소프트정보서비스, (주)원원소프트, (주)케이에이레저, (주)펫츠뷰 4개  
 사는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이 적어 과징금 부과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징금 부과를 하지 않도록 하고, (주)스마트관리의 경우 홈페이지 기능테스트 과정에서 로그  
 인한 이용자가 타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했는데 저희가 조사한 결과, 유출경위와 위반사실과의  
 연관성은 없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했고, (주)코로의 경우 로그기록이 없어서 개인정보  
 유출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파코비넷 역시 로그기록이 없어서 개인정보 유출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고, 파코비넷 설립 이전에 유출된 점 등을 고려해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으로 같음하고자 합니다. 다만, (주)코라의 경우 차후 수사기관에서 해커를 검거하여  
 유출경로가 확인될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재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과태료 부과  
 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주)소프트정보서비스 등 13개사가 해당됩니다.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  
 그리고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을 위반한 파코비넷입니다.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  
 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하겠습니다. 과태료 가중·감경  
 관련해서 특별하게 가중·감경할 사유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파코비넷에 대해서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의무를 위반한 이데일리(주) 등  
 2개사입니다. 기준금액은 1,000만원을 각 적용하겠습니다. 과태료 가중 관련해서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인 이데일리(주)와 (주)펫츠뷰에 대해 기준금액의 30%인  
 300만원을 가중하고, 소기업으로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주)펫츠뷰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의 30%인 300만원을 감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최종과태료는 이데일리  
 (주)에 대해 과태료 1,300만원, (주)펫츠뷰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개인  
 정보의 보호조치를 위반한 (주)소프트정보서비스 등 13개사입니다. 기준금액은 모두 1,000만원을  
 각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가중 관련해서 보호조치 관련 위반행위가 2개인 파코비넷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의 30%인 300만원을 가중하고, 위반행위가 3개 이상인 에듀크리에이터(주)

등 6개사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의 50%인 500만원을 각 가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감경입니다. 시정조치(안)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완료한 (주)소프트정보서비스 등 12개사에 대해 기준금액의 50%인 500만원을 각 감경하고, 의견제출 기간 내에 시정완료하지는 못하였으나 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주)제트콜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의 30%인 300만원을 감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최종과태료입니다. (주)소프트정보서비스 등 6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500만원을 각 부과하고, 파코비넷에 대해서는 과태료 800만원, 에듀크리에이터(주) 등 5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각 1,000만원, (주)제트콜에 대해서는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의 파기를 위반한 파코비넷 등 2개사입니다. 기준금액은 1,000만원을 각 적용하겠습니다. 과태료 가중 및 감경 관련해서 시정조치(안)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을 완료한 파코비넷 등 2개사에 대해 기준금액의 50%인 500만원을 각 감경하고자 합니다. 최종과태료입니다. 파코비넷 등 2개사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각 부과하고자 합니다. 최종과태료 산출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개 사업자 총 1억 4,300만원입니다. <라> 시정권고 사항입니다. (주)위드이노베이션은 담당자가 '개인정보이용내역 통지' 메일을 이용자에게 보내는 과정에서 1차 정상적인 개별발송 이후 시간 과다를 이유로 그룹발송으로 변경하면서 수신자 숨김 참조기능을 비활성화하여 이메일 페이지에 로그인한 이용자에게 다른 회원의 이메일 주소 15만여건이 유출된 경우입니다. 이는 담당자의 과실로 보이며, 이 사안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법령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대표자를 비롯한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 실시 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이행토록 시정 권고하고자 합니다. 고발사항입니다. 정보통신망법과 고발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6개 위반사업자에 대한 고발여부를 검토한 결과, 고발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고발하지 않하고자 합니다. 수사기관 이첩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용자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등을 달성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활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73조제1호의2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이데일리(주)는 조사 당시 2006년 5월 12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휴대전화 교체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수집한 이동통신 가입신청자 2만 6,000여건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의 고발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에 따라 조사결과를 수사기관에 이첩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시정조치 통보는 4월 중에, 이행점검은 하반기 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상임위원**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14개 사업자에 대한 조사 결과, 관련 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13개 사업자의 행정처분 원안에 동의합니다. 또한 (주)위드이노베이션에 대해 시정권고를 한 것도 합당한 조치라고 봅니다. 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메일을 보내는 과정에서 숨김 참조기능을 활성화시키지 않아 다른 회원의 이메일 주소를 노출시킨 것은 관리·운영상의 잘못은 있지만 법령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오늘 처분을 받은 피심인들의

개인정보 유출의 경로를 보면 관리자의 계정 탈취, 웹사이트의 취약점을 노린 웹쉘 공격, SQL-Injection 등의 외부 침입 대응 소홀과 접근권한 관리 소홀 등 사업자의 부작위, 즉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은 것에 의한 부실대응이 대부분의 원인입니다. 특히 200만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현현교육이나 파코비넷을 비롯한 4개 업체는 해킹을 당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검경의 통보를 받은 방통위의 사실조사를 통해 뒤늦게 유출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출액이 큰 대규모 기업들이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을 소홀히 할 경우 그 대가가 크다는 것을 깨닫고 보완조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의 온라인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각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보호와 보완조치에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추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반사업자들 중 1, 2, 3, 4위 매출액을 따지면 다 800억원, 600억원, 500억원, 400억원 이렇습니다. ㈜위드이노베이션은 3년 전에 '여기어때'라는 숙박예약서비스 그 업체 아닙니까?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맞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그때 물의를 빚어서 과태료를 처분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또 3년 만에 담당자 메일 발송의 실수가 나와서 또 이렇게 15만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시스템을 완비하고 있지 않거나 직원들의 안이한 보안의식이 또 빚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업원이 약 400명에 육박하고, 재작년 매출이 686억원이나 되는 이런 큰 사업체가 과태료 처분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보안의식이 미흡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유감스럽게도 언론사 두 군데가 개인정보 유출로 걸렸습니다. 다들 제대로 된 열심히 하는 언론사인데, 특히 IT 쪽에도 전문성 있는 언론사들이 접근권리 관리소홀로 걸리고,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것이 걸려 있습니다. 특히 이데일리(주)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5일 이내 신고만 하면 된다고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것이 망법 위반으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이것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은 뭔가 이것도 계도를 소홀히 했거나 이런 부분을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언론사까지 이런 실수가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런 법 위반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은 법 적용을 받습니다', '또 며칠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는 것을 고지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다 온라인 시대인데 각 사업체에 그런 부분들을 수시로 우리가 계도할 수 없습니까? 주의사항을 보내서 직원들이 그것을 들여다보게, 이런 법 무지에 의해 잘못 알고 있어서 이렇게 언론사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계도를 좀 더 활발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매출이 수백억 되는 회사들이 계속 위반사항이 나온다는 것은 정말 보안의식이 미흡하거나 잘못 알고 있거나 또는 보안시스템 투자를 게을리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계도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정기적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

- 계도 활동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각 회사의 보안담당자들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하는 중점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조그마한 중소기업들이 더 취약하다고 생각해서 중소기업의 종사자들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과 같은 상황을 봤을 때 좀 더 그것을 확대해서 언론사도 포함해서 큰 기업이라도 각사의 보안담당자들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좀 더 보강하고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다시는 이런 위반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또 업체에 온라인 안내문도 정기적으로 고지해서 자꾸 보안의식을 강화하는 것이 시스템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

- 알겠습니다.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추가 말씀드리면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주)위드이노베이션의 경우 같은 사안은 아니지만 '17년에 과태료뿐만 아니고 과징금까지 부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자 실수로 인해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시정권고를 통보하는 시점에서 직접 만나서 (주)위드이노베이션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보호조치를 잘 취할 수 있도록 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원안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보호는 앞으로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앞에 10개사는 유출신고에 따라 조사한 결과이고, 뒤에 4개사는 수사기관의 통보가 오기 전까지는 개인정보 유출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서 더 심각한 문제라는데 공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고에 따라 조사한 업체나 신고조차 하지 않은 업체나 과징금 필수 감경을 똑같이 50%를 받고,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10% 감경을 받아서 기준금액의 무려 60%나 감경을 받았는데 과징금이 백화점 바겐세일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대폭 감경해도 되는지 의문입니다. 현재 감경기준은 국회에서도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차제에 고시를 개정

해서라도 과징금 부과기준을 보다 세분화할 수 있는지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야기가 있었지만 언론사는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감시해야 할 공적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두 언론사가 사기업과 똑같이 개인정보보호 위반사업자 리스트에 올라왔다는 것 자체에 대해 각 언론사가 경각심을 더 가져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아직도 개인정보보호 투자의 중요성과 그 보호의 법적 책임감이 부족한 것은 이 업체의 CEO가 개인정보보호조치를 필수 투자로 보기보다는 아직도 비용으로 보는 인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업체의 CEO들의 인식 전환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이 안전에 여러 가지로 시간이 길어집니다만 해킹이라는 것은 아주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것은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각 사업자들이 대응을 해야 하는데 그 사이 이런 건이 생길 때마다 교육을 강화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여전히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오늘도 안전에 올라온 14개 사업자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무려 600만건에 달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또 하나 업종이 다양합니다. 이 업종, 저 업종 굉장히 다양한 업종이 다 이러니까 전반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인식이 없다고 봅니다. 방통위가 계속 노력을 하고, 또 사업자들도 노력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면 더 많이 조사하면 엄청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 다시 한 번 인식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아주 작은 사업자지만 (주)오마이사이트에서 의견을 보내온 것을 보면 “해커가 관리자 페이지에서 다수의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하는 하지 않고 화면으로 봤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출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을 방통위에 제시하고 있는데, 이 인식이야말로 굉장히 문제입니다. 해커가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하든 화면으로 보든 이미 이것은 유출된 것인데, 이런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창룡 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이것은 여러 가지 법규나 고시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한 가지만 여쭙보겠습니다. 17페이지 추가적 가중·감경의 20% 감경과 10% 감경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추가적 가중·감경 관련해서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30% 이내에서 그리고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에는 역시 30% 이내에서 감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30% 혹은 20%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는데 저희가 예전에 위원님들께서 감경에 대해 방통위의 조사에 적극 협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 부분에 대해 감경을 너무 많이 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해주셔서 자진신고와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2가지가 있으면 그 2개를 합해서 20%를 감경해 주고, 자진신고하지 않고 조사에만 적극 협력한 경우에는 10%로 낮추

어서 적용한 것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20%, 10%로 차등을 둔 것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 **양기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

- 간단하게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해킹에 대한 사고가 많고, 또 여기에는 각 업체의 정보보호 투자가 중요해서 해킹과 관련해서는 그쪽을 담당하고 있는 과기정통부와 협의해서 어쨌든 CEO의 정보보호 투자에 대한 인식제고를 같이 노력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감경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가능하면 최대한 엄격하게 감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워드이노베이션과 관련해서 현재 있는 법에 의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는 다했고, 저희 고시에 의한 것까지는 다 했는데 시스템 상의 조치가 아닌 이메일 오발송에 대해서는 고시에 그런 내용이 없어서 앞으로 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메일 오발송에 대해서도 저희가 처벌할 수 있는 고시를 만드는 것에 대해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 7. 보고사항

### 가. 2019년도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전문가 회의’에서 마련한 ‘허위조작정보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에 관한 사항

○ **한상혁 위원장**

- 이어서 <보고안건 가> “2019년도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전문가 회의’에서 마련한 ‘허위조작정보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인터넷윤리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주 인터넷윤리팀장**

- 인터넷윤리팀장입니다. 2019년도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전문가 회의’에서 마련한 ‘허위조작정보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에 관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2019년도에 정책연구로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 방안 연구’를 실시하면서, 연구 수행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전문가회의’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전문가 회의에서는 ‘허위조작정보 문제해결을 위한 제언’을 마련하였고, 제언문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추진 배경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9년도 정책연구를 시행하기

전에 2018년도 정책연구로서 ‘인터넷 신뢰도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를 실시한 바 있었고, 이 연구에서 해외의 다양한 자율규제 모델 등을 검토하고, 이를 참조로 국내 상황에 맞는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 전문가회의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2019년 5월에 말씀드렸던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 방안 연구’ 과제에 착수하였고, ‘19년 6월 과제 추진을 위해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전문가회의’를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허위조작정보 전문가회의’는 최초 이름은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 명칭으로 구성되었으나, 2차 회의에서 전문가 회의 구성원 간 논의를 거쳐 이 명칭이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전문가회의’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6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총 7회의 전문가 회의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회의 내부에서 자유로운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방통위는 제2차 회의에서부터는 참석하지 않은 바 있었습니다. ‘19년 12월에 전문가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 문제해결을 위한 오늘 보고드린 제언을 도출하여 공개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이를 통해 인터넷 사업자 대상으로 의견수렴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20년 1월에 수행기관에서 방통위에 연구과제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릴 전문가회의의 주된 내용과 제안 내용은 전문가회의를 운영한 KISDI의 성욱제 박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 ○ 성욱제 KISDI 방송미디어연구실 연구위원

- 안녕하십니까? KISDI의 성욱제입니다. 보고자료 <4>번에 보시면 제언문의 주요 내용이라고 해서 개념정의 및 범위는 나와 있는데, 일단 개념 정의부터 보시고 제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허위조작정보 개념정의는 구성요건을 몇 가지 중요한 핵심요소로 봤습니다. 고의적 이냐,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조작을 했느냐, 그다음에 개인·집단에 미치는 실질적 해악이 있느냐, 여러 가지 논의한 끝에 실질적 해악 부분이 들어가면 너무 구체적이고 허위조작정보의 범위가 너무 좁아진다고 봐서 나머지 3개를 살려서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정치적·경제적 이익 등을 얻을 목적으로 정보이용자들이 사실로 오인하도록 생산·유포된 모든 정보’라고 해서 저희가 개념정의를 해봤습니다. 언론중재법에 의한 언론사의 기사, 패러디, 풍자, 정치적 견해 등은 제외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언의 기본원칙부터는 <붙임>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붙임>자료 25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언의 기본원칙입니다. 제언의 기본원칙은 총 7가지입니다. 먼저 가짜뉴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먼저 제안하면서 이제 허위조작정보 문제에 대응하는 안전장치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각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두 번째 원칙으로 제언했습니다. 세 번째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자율규제라는 틀로 상정했기 때문에 플랫폼사업자들의 협조가 많이 필요한데, 그들이 자율규제로 하는 모든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절차는 투명해야 한다는 것들이 세 번째 기본원칙으로 잡았습니다. 네 번째는 워낙 문제가 광범위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단기적인 대안을 마련하다 보면 자칫 문제가 조금 더 해결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잡았습니다. 여섯 번째는 그렇게 종합적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의견수렴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에 기반한 실증적이면서 정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일곱 번째 원칙을 설정했습니다. 총 4가지 영역으로 제언을 했습니다. 첫 번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제언입니다. 첫 번째는 가짜계정 같은 것들,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허위조작 정보가 있는 경우 광고수익을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앞서 두 번째

것을 하기 위해서는 허위조작정보가 무엇인가를 판별하는 기준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3자 팩트체크기관과 연계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세 번째로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팩트체크기관이 어떤 기관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정치적 중립성 등 팩트체크기관이 해야 할 덕목과 기준들이 잘 부합하는 기관과 연계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가시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다 상단에 배치한다거나 허위조작정보라고 판명된 경우 뒤로 배치한다거나 배열, 배치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반론이나 이의 제기, 진위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의 링크도 첨부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고리즘 기준을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앞으로 보내고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뒤로 보내는 등의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알고리즘 방식이 되는데, 그 알고리즘으로 인해 정확하게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정도의 투명성 확립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용자가 현재는 알고리즘에 따라 자신이 받는 정보가 왜 내가 보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없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명확하게 이용자가 동의하는 동의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지금 현재 있는 신고체계보다 손쉽게 신고체계를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팩트체크의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개발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개발지원 노력이 누가 지원노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전문가회의에서는 플랫폼 사업자도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여덟 번째는 현재 KISO로 대표되는 국내 자율규제 시스템이 있지만 역외사업자들은 다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율규제 시스템이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역외사업자 및 국내 미참여 사업자에 대한 참여 독려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아홉 번째는 다소 민감한 부분이긴 했지만 허위조작정보 관련 연구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처리가 된 데이터 등을 연구학자에게 개방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열 번째는 이러한 모든 사항들을 공유하기 위해 현황보고서를 발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다음은 시민 영역에 대한 제안입니다. 시민은 이용자와 연구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용자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하게 첫 번째로 제언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두가 팩트체크 주체일 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두 번째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만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보다 종합적인 논의를 광범위한 개방적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유럽집행위원회의 통합 네트워크 SOMA를 예시로 들어놓았는데 그 안에 보면 허위조작정보와 관련된 모든 전문가 집단들이 팩트체커, 기자, 연구자들을 포함해서 그들이 마음껏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런 역할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봤습니다. 세 번째 영역은 언론입니다. 언론은 언론 자체가 허위조작정보의 생산자라는 의미는 아니고,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팩트체크 저널리즘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팩트체크가 당연한 언론의 기본적 의무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현재 통용되는 팩트체크 개념으로 그 개념을 확립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두 번째는 허위조작정보의 기사화를 자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다른 사례를 보면 '전략적 침묵'이라고 했는데 '전략적 침묵'이라는 것은 허위조작정보라는 것들을 알면 절대 기본적으로 클릭수를 유도할 수 있지만, 그것들을 전략적으로 게시하지 않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세 번째는 허위조작정보 기술이 날로 고도화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네 번째는 언론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보다 협조를 해 주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네 번째는 정부와 국회 영역에 대한 제언입니다. 첫 번째는 허위조작정보 문제가 자꾸 당파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초당파적 결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선언적 제언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화 팩트체크 시스템 개발 지원에 대해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앞서 이용자 파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종합적 연구가 지원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허위조작정보가 다면적 측면을 가지고 있으니 각자 부처에서 소관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주 인터넷윤리팀장**

- 이어서 지금 제언해 주신 전문가회의 내용에 따라서 저희 방통위에서 추진할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정부 관련 제언은 방통위에서는 신규 사업으로 민간 자율의 팩트체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기반의 마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팩트체크 시스템의 개발과 팩트체크 전문교육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미디어 교육과 관련해서는 이용자의 팩트체크 역량 강화나 정보 판별력 제고 교육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된 제언과 관련해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사업자와 전문가회의의 제언문을 공유하면서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 등이 있는지에 대해서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시민사회 등 관련 제언에 있어서는 관련 단체나 협회 등에 저희가 동 제언문을 공문으로 송부하고 향후 미디어 교육이나 팩트체크 사업 시에 시민참여를 유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육 상임위원**

- 이 안건은 매우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비록 전문가 제언 형태이지만 허위조작정보 문제 해결을 위해 처음으로 플랫폼 사업자와 시민, 언론 그리고 정부와 국회에 대해 행동 강령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단호한 대응은 성숙한 민주주의 구현의 토대가 되는 건전한 공론장 형성과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진영논리로 분열되어서 허위조작정보의 피해방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정당한 정책마저도 선의를 의심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허위조작정보 확산에 맞설 책임과 협력의 의무가 있다는 점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 제언의 7가지 기본원칙은 보편·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수용되기를 희망합니다. 제언은 허위조작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사회영역별 행동지침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정부가 관련 정책을 마련하거나 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할 때 든든한 기초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4개 영역별 제언 사항에 대해 공감하고, 특히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과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허위조작정보의 광고 수익 차단, 제3자 팩트체크기관과의 연계, 허위조작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알고리즘 기준의 투명성 확립 노력은 꾸준히 실천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론의 역할은 재론의 여지가 없이 중요하고 민간 차원의 팩트체크 활성화를 위한 우리 위원회의 지원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들이 언론의 적극적인 팩트체크 기능을 통해 시정되는 사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팩트체크 시스템 개발에 속도를 내서 이 시스템이 언론사를 비롯해 우리 사회 모두의 공동자원으로 활용되기를 희망합니다.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전문가회의 운영을 두고 여러 곳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거리두기를 통해 전문가 지원이 도출될 수 있도록 묵묵히 소임을 다한 KISDI와 사무처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추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이 재작년 말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바로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로 우리가 이름을 바꾸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불식시키고 또 해악을 주는 이런 가짜뉴스의 유통과 생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에 의해 전문가회의가 만들어지고 KISDI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서가 나오고 제언이 나왔습니다. 성욱제 박사,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총선을 바로 직전에 눈앞에 두고 이런 가짜뉴스, 또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특히 개념과 정의가 확립되고 또 영역별로 정부와 이용자, 연구자, 언론, 시민단체에 이르기까지 그런 제언이 영역별로 따로 주어져서 대단히 의미 깊은 보고서가 나왔다, 또 제언이 나왔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결국 표현의 자유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고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총선을 앞두고, 특히 그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큰 활력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진영논리에 의해 공방을 벌여서 또 자칫 정부가 나서서 그런 허위조작정보를 재단하고, 또 플랫폼 사업자로 하여금 강제로 그것을 삭제하게 하면 자칫 전체주의 국가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가 검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장 우려했기 때문에 결국 해법은 팩트체크라고 봅니다. 그래서 SOMA라고 아까 보고서에 나와 있었던 유럽 EU에서 모든 연구자들, 또 언론까지 다 참여하는 그런 온라인의 팩트체크 시스템이 하루속히 도입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아마 정부에서도 사업예산으로 올해 6억이 나와 있지요?

○ **김영주 인터넷윤리팀장**

- 6억 1,000만원입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어떻게 됩니까? 팩트체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수행기관 선정도 해야 하고, 또 기술 개발도 해야 하고, 또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하고 그런 것이 다 이 예산

으로 쓰이는 것이지요?

○ **김영주 인터넷윤리팀장**

- 맞습니다. 지금 6억 1,000만원의 신규 예산사업으로 지난 2월부터 해서 공모를 민간 경상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업체가 언제쯤 선정되니까?

○ **김영주 인터넷윤리팀장**

- 지금 수행기관으로서는 공모를 거쳐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선정되어 있고, 그 세부사업내역에 대해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아주 민감한 총선을 앞둔 시기에 자칫 어떤 오해를 주지 않도록 전문가회의가 정리를 잘했다고 봅니다. 특히 제2차 회의부터는 정부에서 참여하지 않고 정말 연구자와, 플랫폼 사업자도 들어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 **성욱제 KISDI 방송미디어연구실 연구위원**

- 전문가로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참여했고, 플랫폼 사업자로 직접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그러면 전문가회의가 활동이 다 종료된 것입니까?

○ **성욱제 KISDI 방송미디어연구실 연구위원**

- 그렇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필요하다면 또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고 대단히 중요한 작업을 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방통위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정부 플랫폼 사업자, 이용자·시민사회 관련 제시를 잘해 주셨지만 저는 여기에 빠진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또 고생하셨지만 쓴 소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방송, 언론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 보고서를 봤더니 언론 쪽의 제안내용이 상당히 부실해서 내용이 이런 식으로만 나와서 '추가적으로 방통위에서 할 것이 없구나'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팩트체크에 기반한



기사를 작성해라, 기자들 나름대로 다 팩트체크에 기반해서 기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SNS 콘텐츠로 기사 작성 시 유의할 점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방송윤리강령이나 보도 가이드라인이 다 되어 있는데 문제는 지키지 않고 SNS상에서도 방송사가 제작한 것을 원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없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방통위가 해야 할 것이 적어도 7가지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는 제가 시간관계상 3가지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에 빠져 있다는 것이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각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 제도가 내실화되어야 합니다, 시청자위원회 제도가 바로 허위조작정보를 1차적으로 내부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자율시스템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2000년 통합방송법 개정할 때 시청자 주권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한 달에 한번 열리다 보니까 실효성도 떨어지고 또 내용 자체가 프로그램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서 문제가 많다는 것이 이미 언론학자들 사이에 공론화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모바일 시대에 맞추어서 앱이 개발되어서 이제는 실시간으로 불만이나 혹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까지 문제를 제기하는 이런 시스템으로까지 발전한 그런 일부 방송사가 있는가 하면 여전히 하지 않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도 저는 자율규제 차원에서 꼭 지적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과 함께 역시 통합방송법 개정할 때 음부즈맨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해서 60분을 일주일에 방송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시다시피 밤늦은 시간대나 새벽시간으로 이렇게 편성시간대를 조정했습니다. 또 내용을 보면 자사프로그램 홍보나 혹은 소개하는 정도로 언론학자들이 '왜 음부즈맨 프로그램이 자사 프로그램 감시·견제하는 취지를 못 살리느냐?'고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런 보고서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표현의 자유를 손 안 대면서 자율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이런 허위조작정보가 적어도 방송사 프로그램에서 인용이나 혹은 보도되는 것을 막는데 이 이상의 좋은 효율 수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어떻게 더 할 수 있는가가 저는 방통위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콘텐츠의 문제는 방심위가 다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심위가 지적한 이런 심의 결정사항은 일주일 내로 결과가 나온 것을 고지만 하면 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거나 혹은 프로그램이 폐지된 경우 각 방송사에서 이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엉뚱한 프로그램, 엉뚱한 시간에 이것을 고지하여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심의규정 위반 고지의 실효성을 강화해서 방송사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가 어떤 잘못 혹은 심의결과를 받았는지 시청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없이도 내부의 이런 자율적인 규제시스템이 잘 마련되어 있고 외국에서 한국의 이런 제도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방송에서 빠져 있다는 것은, 저는 알면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기 싫어서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적 대안이 제가 생각했을 때 별 효용이 없다면 제안서에서 빠질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빼놓았다는 것은 부실한 보고서가 아니냐, 그래서 저는 1년간 시간이 걸렸고 다른 것은 잘 하셨습니다만, 또 이런 허위조작정보를 통해 방통위가 상당한 고충을 겪었는데 왜 1년간이나 많은 전문가들이 포함되어서 직접적으로 우리 방통위가 할 수 있는 방송사의 제도개선의 내용이 없는가, 그 점은 아쉽습니다. 굉장히 수고하셨지만 이 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 ○ 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허위조작정보와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언론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당연히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고, 또 그러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전문가회의'는 처음 시작 자체가 통신·인터넷 분야를 중심으로 시작되다 보니까 정책연구과제도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방안 연구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 위주로 연구가 되고, 또 전문가회의에서도 그 중심으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물론 일부 연결하는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포함된 부분도 있지만 그 중심 자체가 통신·인터넷 분야였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방통위 전체가 더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이런 보고서가 나온 것이 정말로 만시지탄의 감이 있습니다. 허위조작정보가 그야말로 만연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책이 굉장히 늦은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보고서가 나온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허위조작정보를 누가 판별하느냐?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 사이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 의견으로 국무총리실에 허위조작정보를 판별해낼 수 있는 팩트체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팩트체크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누구나 쓸 수 있는, 대학에서도 쓸 수 있고, 언론에서도 쓸 수 있고, 방심위, 그다음에 언론중재위에서도 쓸 수 있고, 학계에서도 쓸 수 있는, 이렇게 범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학자, 그다음에 포털, 언론사 그리고 이 경험이 많은 서울대 팩트체크센터 이런 쪽이 참여해서 이 시스템을 만드는데, 지금 미국은 어느 한 아이টে에 대해 갑자기 '좋아요', 갑자기 '나빠요' 이것이 급상승할 경우 이것을 모두 다 끊어모으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빨리 도입해서 한국화해야 합니다. 이것을 토대로 팩트체크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핵심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방통위가 그에 관한 것을 총리실에도 그때 의견을 냈는데 그 이후에 전문가 회의라는 형태를 통해서 이런 제언이 나온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정부기관이 이런 것을 추진하면 괜히 오해를 받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이 시스템을 만드는 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나서도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산이 앞으로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 방안까지 잘 검토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김영주 인터넷윤리팀장**

-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처럼 저희가 올해 6억 1,000만원으로 신규사업으로 시작하는 부분에서 누구나 팩트체크에 참여할 수 있는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술기반의

팩트체크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활용하면서 아울러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팩트체크 전문교육 팩트체커에 대한 인력양성 부분도 함께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성육제 KISDI 방송미디어연구실 연구위원**

- 아까 김창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 이미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포커스가 플랫폼 사업자에 맞춰졌기 때문에 방송사라는 언론에 대해 방통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는 말씀하신 것처럼 논의에서 핵심적인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허위 조작정보를 줄이기 위해 방통위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만약 초점이 맞춰졌더라면 말씀하신 부분들이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플랫폼 사업자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정부의 역할을 플랫폼 사업자들이 더 잘할 수 있는 무엇을 지원하는가 쪽에 맞춰진 것입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은 추후 검토해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제언이 제언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은 각계가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하고, 특히 정부 차원에서도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전에 가짜뉴스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금칙어 비슷하게 이야기 끝나는 순간 정쟁의 대상이 되었는데, 최근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른바 가짜뉴스, 허위 조작정보가 가져오는 사회적 폐해에 대해 지금은 국민 누구든지 다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 아까 표 위원님 말씀하셨던 가짜뉴스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주체가 누구인지,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될 문제이고, 우리 사회에 가짜뉴스가 가져오는 폐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은 널리 퍼졌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각계에서 이와 관련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언의 내용 많이 노력해서 고생하셔서 좋은 제언들을 해주셨으니, 특히 저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런 내용들, 제언의 내용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나.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에 관한 건 (2020-13-086)**

○ **한상혁 위원장**

- 다음은 <의결안건 나>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방송광고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곽진희 방송광고정책과장**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출력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그리고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경과사항 보시겠습니다. 작년 12월 26일 위원회에 보고드렸고, 그 이후 행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6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완료하였고, 심사 결과 비중요규제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주시청시간대 공익광고 편성 시 가중치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공익광고 노출 확대를 위해 주시청시간대 100분의 150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도전문 방송채널에 대해서는 대상 시간대를 별도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광고 의무편성 면제 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세 방송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방송사업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익광고 의무편성을 면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 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비대칭규제 완화를 위해 지상파TV와 매체영향력이 큰 주요 방송사업자의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 차이를 4배에서 2배로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그리고 방송사업매출액이 400억원 이상인 PP에 대해서는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을 0.05%에서 0.1%로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입니다. 한국방송협회에서 의견이 제출되었고, 의견은 종편PP와 보도PP 그리고 방송사업매출액 3,000억원 이상인 MPP에 대해서는 지상파TV와 동일한 의무편성 비율을 적용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규제를 4배로 급격히 상향하게 될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개정안을 시행한 후에 효과 등을 분석해서 향후 추가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무이행을 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와 관련해서는 편성계획 정비를 위한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일정입니다. 관보 게재 후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상임위원

- 이 안건은 주시청시간대 공익광고 편성 시 가중치 부여와 공익광고 의무편성 면제의 기준 설정,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 조정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고시를 통해 사업자들에게 기준을 공표하는 내용이므로 의결주문에 동의합니다. 행정예고 기간 중 한국방송협회에서 방송사업매출액 3,000억원 이상인 MPP에 대해서는 지상파TV와 동일한 수준의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급격한 비율 상승은 저 역시 무리라고 판단합니다. 또 종편과 보도전문채널 외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을 0.1%로 올리는 PP사업자 기준을 방송사업매출액 400억원 이상으로 제시했습니다. 전전년도 방송사업매출액이 400억원 이상인 PP는 모두 26개입니다. 현재 송출 중인 PP 203개사 가운데 약 16% 수준이지만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전체 91%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시청점유율 조사·산정 제도 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

○ **한상혁 위원장**

- 이어서 <보고안건 나> “시청점유율 조사·산정 제도 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배춘환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시청점유율 조사·산정 제도 개선 계획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유입니다. 다양해진 방송 프로그램 시청행태 반영과 운영 효율화 등 시청점유율 제도 개선계획을 보고드리기 위함입니다. 주요경과입니다. 통합시청점유율 관련 경과에 대해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N스크린’이라는 이름으로 스마트폰과 PC를 통한 또한 VOD 방식의 비실시간 방송시청 등에 대한 시청기록을 시범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조사기간을 4개월에서 6개월,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해 왔으며, 오디오 매칭기술을 도입하고, 또한 유튜브 등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운영 효율화 관련 경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처에서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시청점유율 제도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아울러 지난해 8월에는 감사원에서 시청점유율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방통위 기관운영 감사 결과보고서 통보 시 적시한 바 있습니다. 제도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 필요사항입니다. 통합시청점유율과 관련해서 시청자들의 방송프로그램 소비경로가 실시간 TV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온라인 및 비실시간 시청행태를 반영하여 기존 시청점유율에 N스크린 시청점유율을 합산하는 통합시청점유율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운영 효율화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자체검토 및 감사원 통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개선방안입니다. 통합시청점유율 도입과 관련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래 <표>에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기존에는 Off-line 영역의 TV와 신문을 산정대상으로 하였지만 이를 On-line 영역의 TV까지 산정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완결된 통합시청점유율 산정을 위해서는 On-line 영역의 신문까지 산정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신문의 경우 Off-line 영역은 ‘부수’, On-line 영역은 ‘시간’이라는 다른 기준에 근거해 산정되고 있어서 이를 합산할 객관적인 방안 마련에 대해 검토가 조금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한편 통합시청점유율 도입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올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내년 조사부터 통합시청점유율을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법령 개정을 해야 하는 이유는 비실시간 방송을 산정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방송법 제69조의2는 시청점유율 산정과 관련하여 전체 텔레비전 방송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로펌들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현행 방송법상 ‘방송’은 편성·기획 등의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어 실시간 방송으로 한정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통합시청점유율의 비실시간 방송 시청시간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아래 <표>의 개정안은 우선 하나의 예시안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그에 따라 고시 개정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시 개정안 또는 현재는 하나의 예시안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통합시청점유율 도입 또한 진정소급의 제약 및 사업자의 신뢰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률 개정 후 ‘21년 조사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률자문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조사까지는 기존 산정 체계를 유지하되, 다만 시청점유율 공표 시 통합시청점유율 결과도 참고자료로 함께 병기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N스크린 조사 관련된 연간보고서를 발간해 왔으나 공공

데이터로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는 월간단위로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운영 효율화 추진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해 왔던 주요내용은 조사패널 축소, 조사대상 채널 축소, 민간시청률 자료 활용 대체 등의 방안이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먼저 조사패널 축소입니다. 패널의 축소는 필연적으로 표본오차가 커지는 현상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러나 표본오차가 과도하게 커지는 것은 문제이지만 적정선의 표본오차를 지키면서 패널을 줄이는 방안은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통계학자 등이 참여한 전문가 연구반 논의를 통해 기초조사는 20,000가구에서 15,000가구, 본조사는 4,000가구에서 3,000가구, N스크린 조사는 6,000가구에서 5,000가구로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미디어다양성위원회에서도 이 정도의 조정은 큰 문제가 없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사대상 채널 축소입니다. 해외방송 채널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데에는 별 이견이 없었습니다. 영향력이 미미한 채널을 제외하는 데도 큰 이견이 없었지만 기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일단 가장 유력한 기준 방안으로 제시된 것은 연간 시청시간 1시간 이하의 채널, 월 시청 시간은 5분 이하가 되는 채널을 제외하는 방안입니다. 이외에도 유료방송 채널별 도달률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속히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시청률 자료 활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는 시청률 조사기관들의 자료를 그대로 구매해서 활용하는 내용인데 일단 조사채널 자체가 제한적이고 수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채널이 과다하게 편중되어 있고 시·군·구 커버리지도 60%대에 머물고 있는 등 정부가 공표하는 조사자료로는 객관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만큼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방안, 예산 절감 실익 등을 보다 심층적으로 고민한 후 추진 여부 및 방안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조사 효율화와 관련해서도 법령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사 대상 채널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방송법 제69조의 2에 있는 '전체 텔레비전 방송'에서 '전체'를 삭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조사 대상 채널 축소와 관련된 기준을 고시에서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패널 축소는 법령 개정 없이도 즉시 추진이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8쪽입니다. 법 개정안 및 고시 개정안은 하나의 예시안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는 이와 같은 효율화 작업 추진 시 사업예산 49억 원 중에서 약 8억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민간시청률 자료를 그대로 활용할 경우에는 약 2억 원의 예산이 추가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이후 향후일정입니다. 통합시청점유율 도입과 관련해서는 올해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통합시청점유율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운영효율화와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안 수립 시 패널 축소 등과 관련된 예산 절감 문제를 기재부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사 대상 채널 축소는 올해 법령개정을 추진하여 내년부터 시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시청률 자료 활용 타당성 검토는 올해 보다 심층적인 검토를 수행하여 추진 여부 및 방안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상임위원

- 과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번 제도개선 계획을

마련하게 된 배경과 그 의미에 대해 추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시청점유율 제안 제도는 신문과 방송 겸영 사업자 허용에 따른 여론 다양성 훼손을 막고, 특정 방송사업자의 영향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런데 TV 외에도 PC나 스마트폰, VOD 등 이른바 N스크린을 통한 시청행태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이를 통합해 시청점유율을 제도에 반영할 필요성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7년 말부터 통합시청점유율 시범 산정을 해 온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청점유율 제도는 여론독과점 방지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현실에서는 시청점유율 30%를 넘는 여론독과점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쟁적 매체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청점유율 조사·산정 제도의 효용성을 놓고 국회는 물론 감사원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처가 지적사항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전문가 논의를 거친 뒤 오늘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개선내용은 보고한 바와 같이 2가지입니다. 시범 산정하던 통합시청점유율을 내년 조사부터 본격 도입하겠다는 것과 시청점유율 조사 패널을 줄이는 등 운영효율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N스크린의 시청기록을 통합시청점유율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비실시간 방송과 TV 이외의 시청수단을 통한 시청시간을 포함 시키기 위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고시 개정과 법 개정 방법 2가지를 놓고 미디어내 전문가 연구반에서 깊이 있는 검토를 하고 또한 별도의 법률자문도 구했습니다. 그 결과, 시청점유율 제도의 침익적 성격을 감안할 때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운영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조사패널과 조사채널을 축소하고 민간시청률 자료를 활용해서 본 조사를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이 가운데 민간시청률 자료는 패널 분포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고, 일부 지역은 조사에서 제외되는 등 데이터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향후 통합시청점유율 조사가 이루어지면 민간에서 생산하지 않는 공공데이터가 방송시장에 제공되는 것입니다. 공신력 있는 시청점유율 데이터가 방송콘텐츠의 시장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게 하는 방송시장의 주요한 인프라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특히 운영효율화를 위해 사업예산 49억원 가운데 약 8억원의 예산을 절감해서 매체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미디어 다양성 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 안건 역시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다. 「중장기 방송제도개선 추진반」 정책제안서 보고에 관한 사항**

○ **한상혁 위원장**

- 마지막으로 <보고안건 다> “ 「중장기 방송제도개선 추진반」 정책제안서 보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방송정책기획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장봉진 방송정책기획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유입니다.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해 저희가 구성·운영해 온 ‘중장기 방송제도개선 추진반’에서 정책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추진 경과입니다. 작년 3월에 ‘19년도 업무계획으로 중장기 방송규제체계

개선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4월에 방송·통신·법률 전문가 등으로 중장기 방송 제도개선 추진반을 2개 분과로 구성했고, 허 육 상임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각 분과회의의 6회, 통합회의의 5회 등 17회 회의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는 방송학회 등 관련 세미나 총 4회를 지원했고, 토론 등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11월 6일에 상임위원회 워크숍을 해서 11월 28일 학계·업계·시민사회 의견수렴 토론회와 12월 한 달간 국민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2월 5일 학계·업계·시민사회 등에 대한 간담회를 통해 2월 말에 추진반에서 최종 정책제안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정책제안서 주요 내용입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방송의 공공성 강화 및 이용자 권익 제고 필요, 경쟁과 혁신을 발현할 수 있는 미디어 생태계 구축 요구, 그리고 방송·통신·인터넷 융합시대 대응을 위해 새로운 규제프레임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를 추진배경으로 해서 정책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장기 정책 추진방향 및 정책 과제입니다. 제도개선의 목표는 융합시대 미디어의 공공성 회복 및 이용자 권익 제고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3대 정책 추진방향으로는 액세스권 강화를 통한 이용자 권리 확대 그리고 방송규제체계 재구조화 및 규제개선, 공정경쟁 환경조성 및 기술발전의 제도적 수용을 선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2대 정책분야와 10대 과제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책과제 세부내용입니다. 첫 번째, 정책분야로는 방송의 공공성 강화 및 건전한 미디어 생태계 회복방안으로 선정하고 6개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는 공·민영방송 체계 개편방안입니다. 이 부분은 공적가치 실현과 산업적 혁신이 모두 어렵다는 상황 판단하에서 소유구조·재원조달 방식 등을 고려하여 공공과 민간영역으로 방송을 구분하고, 각 영역별 비전과 중점가치 및 정책목표를 재정립하였습니다. 공공영역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공공서비스 제공을 유지토록 하고, 또 민간영역의 부분에 있어서는 경쟁 활성화를 목표로 사전적인 구조규제를 사후 행태규제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 하였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는 공영방송의 공공성 확보와 관련해서 모든 방송에 포괄적으로 부과되어 있는 공적책임을 면허체계 개편을 전제로 해서 '공영방송'과 '공공서비스방송'으로 분리하여, 허가체계별로 명확한 책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방송재원의 위상정립 및 다각화 방안입니다. 모바일·온라인 광고의 약진 등 방송재원이 취약함에 따라서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이 각각 적합한 가치 실현을 위해 방송재원을 다각화 할 수 있도록 공공재원 부분뿐만 아니라 상업적 재원에 대한 제도 개선 등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이용자 권익 강화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용자 관점이 반영되도록 미디어 정책 결정 시 국민참여 강화, 시청자위원회 운영 정상화 및 평가 강화, 미디어 교육 확대 등을 제안하였고, 다섯 번째로 지역성 구현 기반 확대 방안과 관련해서는 미디어 환경 변화를 고려해서 지역성 개념을 재설정하고, 편성이나 권역규제 등 관련 규제들을 재검토함으로써 지역성 구현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것들을 제안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과제로는 보편적 서비스 구현 및 네트워크 운영 효율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지금 유·무료와 관계없이 보편적 서비스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재난방송 등 무료 보편적 서비스와 그 대상을 규정하고, '기술중립성'의 원칙하에 네트워크가 다양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야 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정책분야는 방송·통신·인터넷 융합에 따른 미래지향적 규제체계 정비방안입니다. 여기는 총 4개 과제를 제안하였고, 일곱 번째로는 방송·통신을 아우르는 규제체계 정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해외 EU 등 주요 국에서는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환하고 있으나, 우리는 아직도 수직적 규제체계로 규제 불균형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선방안으로 동일서비스·동일규제 원칙과



또는 공익성, 이용자 보호 등 규제 목적, 그리고 사업자 규모와 영향력 등에 부합하도록 현재 체계를 콘텐츠와 플랫폼·네트워크별로 계층화해서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부분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반되는 것으로 여덟 번째 방송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그간 논의되어 왔던 방송법상의 '방송' 개념을 확장하기보다는 '방송'의 개념을 서비스 중심으로 바꾸고, 그리고 방송·통신·인터넷 융합환경에 맞도록 미디어적 성격을 고려하여 가칭 '시청각 미디어서비스'의 개념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로 OTT와 관련한 부분은 최소 규제 원칙하에 시장 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제출 의무화, 또는 금지행위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외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 사업자 규제 실효성 확보 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형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미디어 시장에 혁신을 도입하기 위해 혁신적 서비스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새로운 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부과, 콘텐츠 지원, 또 미래형 서비스 지원 방안 등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을 제기하였습니다. 앞서 경과에서 보고드린 대로 의견수렴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반영하고 조치해 나갈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의견수렴 결과를 보면 4가지로 요약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안된 공·민영 규제체계 그 부분이 오히려 방송의 공공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과 두 번째는 여전히 사업자 관점을 우선해서 정책을 수립할 우려가 있다, 세 번째로는 공영방송과 공공서비스방송에 대한 구분기준이 모호한 문제,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였습니다. 이 부분들은 제도개선 추진반에서 논의를 통해서 다음의 사항 등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민영 규제체계 개편의 취지를 보완하고, 참여 중심의 적극적인 이용자 권리 강화에 대한 부분을 보다 명확히 해서 정책 제안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서비스방송과 공영방송에 대한 구분은 허가체계 개편 등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한 명확한 책무 부과와 공적재원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으로 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런 공영방송과 공공서비스방송의 구분, 방송통신 규제체계 법제화 등 추가적인 논의 부분은 추가 정책연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 정책 제안서에 대한 평가입니다. 방송·통신·인터넷이 융합하고, 글로벌 미디어 기업이 급성장하는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향후 5~7년간의 중장기 비전과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한 것에는 의의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향후 전망 분석을 통해 현행 방송제도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과 방송·통신의 규제체계 전체를 포괄하는 정책목표와 과제를 마련하고, 제도개선 추진반뿐만 아니라 각계 의견수렴 결과를 전체 속기록을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제안서에 대한 이행방안입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접수해 주시면 각 정책과제별로 시급성과 추가 논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장·단 과제를 구분하여 이행하고자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추진이 가능한 광고·편성·기술규제 등 개별적인 규제 개선과 지역방송 발전방안, 이용자 권익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등은 '20년도 연초에 마련한 업무계획에 따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요 의견수렴에서 나온 것과 같이 방송의 공공성 강화 방안이나 방송통신의 통합규제체계 등에 대해서는 범사회적 숙의 과정과 방통위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이 부분은 정책연구와 의견수렴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책제안서를 접수해 주시면 방통위나 KISDI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책으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한상혁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상임위원

- 보고한 「중장기 방송제도개선 추진반」의 정책제안서는 제4기 방통위가 남긴 주요한 사업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루고 있는 범위가 워낙 넓어서 어느 것 하나 명확히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겠지만 향후 5년에서 7년간의 방송통신 정책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특히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지 10여년이 지났음에도 현재 규제의 기본 틀은 아직 2000년 통합방송법 체제에 머물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정책 제안서가 더욱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제안서는 지난 20년간 방송통신 정책에 대한 공과를 점검하고 지상파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의 근거가 된 교차보조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방송통신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모바일까지 융합되는 시대를 맞이하여 미디어 정책, 미디어 산업의 미래지향적 제도 설계를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인지에 관련된 방향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보고한 바와 같이 융합시대의 미디어의 공공성 회복 및 이용자 권익 제고를 정책 목표로 첫째 액세스권 강화를 통한 이용자의 권리 확대, 둘째 방송규제체계 재구조화 및 규제 개선, 셋째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기술 발전의 제도적 수용이라는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2대 정책분야, 10대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정책제안서를 제대로 보는 방법을 잠시 알려드리면 1, 2, 3부를 읽으신 뒤에 4부가 아니라 5부로 바로 건너뛰어서 방송·통신·인터넷 융합에 따른 미래지향적 규제체계 정비방안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송·통신의 규제체계 정리 방안, 방송개념의 재정립 방안, OTT 등 신규서비스 정책방안, 미래형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먼저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5부의 세부 과제를 먼저 보신 후에 4부에서 제시한 현재의 방송시스템을 어떻게 정비하고 살려낼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제안서를 읽는 것이 훨씬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왜 영조물이라는 개념이 제시됐는지를 이해하기가 쉽고, MBC가 공영방송에 속하느냐, 혹은 공공서비스 방안에 속하느냐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거나 지역성 구현기반 확대 방안이 부족하다는 등의 다소 지엽적인 쟁점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1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지난 20년에서 향후 10년간 전개될 주요 쟁점들을 언급하다 보니 세부 항목들은 확실한 매듭을 짓지 못하고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 둔 것이 제안서의 전체적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개월 이상 중장기 방송제도 개선 추진반 연구작업에 참여한 연구진과 사무처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 제안서를 토대로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여러 곳에서 범사회적인 토론과 대안 제시가 나와서 더욱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방안으로 다듬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중장기 방송제도개선 추진반을 운영해 오느라고 고생 많이 하였고, 대단히 의미 깊은 중장기 과제를 정리해서 책자까지 이렇게 발간한 것 대단히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당장 시급히 시행해야 할 것, 중장기 정책으로 또 추진해야 할 것들을 구분해서 시행하고 법·제도 보완되어야 할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분이 되어서 정리했다는 의의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책은 언제 발간이 되고 어디까지 공개가 되지요? 각 사회단체 등 연구자들에게 가게 됩니까?

○ 장봉진 방송정책기획과장

- 위원님들 책상에 올려진 정책제안서는 가안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오늘 보고를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 초에 책을 만들어서 일단 홈페이지에 올리고 필요한 분들께는 책자를 배포해 드릴 계획입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연구자뿐만 아니라 언론 종사자들도 보고 싶어 할 텐데 언제부터 어떻게 접근하면 볼 수 있습니까?

○ 장봉진 방송정책기획과장

- 오늘 중요한 요약본은 홈페이지에 올릴 것이고, 전체본은 책자가 제작되는 동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수고했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방송 현업자들은 하루하루 현실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서 당장 단기적으로 올해, 내년의 방송정책이 무엇인지, 또 공영방송의 위상 정립이나 재원 확보 같은 현재의 방송 현안을 따로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까? 중장기 정책에서 우리가 인용하거나 참고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따로 있습니까? 그리고 중장기 정책은 언제를 상정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장봉진 방송정책기획과장

- 중장기는 향후 5~7년으로 추진반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 주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민영 방송 체계 개편이나 공영방송과 PSB의 구분 등은 조금 더 사회적인 숙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법안까지 만들어서 개정되어야 이행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고, 구체적인 것은 올해도 지속하겠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규제개선과 관련된 부분들, 광고·편성규제, 기술규제, 소유규제 등은 올해 개선해서 법안을 발의하거나 지속적으로 각 국에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달리 의견 없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제안서가 결국 나왔는데 이 제안이 제안에 그치지 않고 정책으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이후 추진계획들을 면밀하게 세워야 한다는 것과 또 이 의견이 최종적으로 구체화된 계획이 아니라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고 국민들과 시민사회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한 마중물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에서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으로 시행해야 할 부분들은 하루속히 정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중장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공론의 장을 마련해서 논의를 구체화시켜 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드리고, 이 안건 역시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 8. 기 타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차기 회의는 3월 18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9. 폐 회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20년 제1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1시 43분 폐회 】